

자연공원법 위반행위 적발보고서
(보관용)

일련번호					
위반일시					
위반장소					
적 용 법 조 항	위 반 행 위 요 지	법 제86조제1항제1호	☐ 법 제24조의3에 따른 출입 및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		
		법 제86조제1항제2호	☐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퇴거 등 조치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		
		법 제86조제1항제3호	☐ 법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한 경우		
		법 제86조제1항제4호	☐ 법 제2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를 한 경우		
		법 제86조제1항제5호	☐ 법 제27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를 한 경우		
		법 제86조제1항제6호	☐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경우		
		법 제86조제1항제6호의2	☐ 법 제36조의8을 위반하여 지질공원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		
		법 제86조제2항제1호	☐ 법 제2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경우		
		법 제86조제2항제2호	☐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 통행을 한 경우		
		법 제86조제2항제3호	☐ 법 제7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사용 등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	
		법 제86조제3항	☐ 법 제27조제1항제7호·제8호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		
		법 제86조제4항	☐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자연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한 경우		
		위반 사항		※ 위반내용(상세히 기재)	
		위 반 자	성명		주민등록번호
주소					
위와 같이 위반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합니다. 성명 (서명 또는 인)					
단속원 직 성명 ○○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 년 월 일 (서명 또는 인)					

과태료 부과 대상자 통보서
(해당 지방자치단체 통보용)

일련번호				
위반일시				
위반장소				
적 용 법 조 항	위 반 행 위 요 지	법 제86조제1항제1호	☐ 법 제24조의3에 따른 출입 및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	
		법 제86조제1항제2호	☐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퇴거 등 조치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	
		법 제86조제1항제3호	☐ 법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총 또는 석공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한 경우	
		법 제86조제1항제4호	☐ 법 제2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를 한 경우	
		법 제86조제1항제5호	☐ 법 제27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 행위를 한 경우	
		법 제86조제1항제6호	☐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경우	
		법 제86조제1항제6호의2	☐ 법 제36조의8을 위반하여 지질공원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	
		법 제86조제2항제1호	☐ 법 제2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 행위를 한 경우	
		법 제86조제2항제2호	☐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 통행을 한 경우	
		법 제86조제2항제3호	☐ 법 제7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사용 등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
		법 제86조제3항	☐ 법 제27조제1항제7호·제8호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	
		법 제86조제4항	☐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자연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한 경우	
		위반 사항	※ 위반내용(상세히 기재)	
위 반 자	성명		주민등록번호	
	주소			
	위와 같이 위반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합니다. 성명 (서명 또는 인)			
년 월 일 단속원 직 성명 ○○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 (서명 또는 인)				
135mm×190mm(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)				